###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 2. 공시사유: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 1) 종류 C-p, S-p, S-i 수익증권 신설
  - 2) 감독원 자산배분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관련 문구 삭제
- 3)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
- 3. 시 행 일: **2015.01.23.**
- 4. 변경 내용:

#### 가. 집합투자규약

| 변경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제 3 조(집합투자기<br>구의 종류 및 명칭<br>등) | 종류 C-p, S-p, S-i<br>수익증권 신설 | ③(본문 생략)<br>(신설) | ③(본문 현행과 같음)<br>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br>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br>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                  | 종류 S-p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 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                  | 종류 S-i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br>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br>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br>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br>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 제 10 조(수익증권의<br>발행 및 예탁)        | 종류 C-p, S-p, S-i<br>수익증권 신설 | ①(본문 생략)<br>(신설) | ①(본문 생략)   |
| 글장 풋 에틱/                        |                             |                  | 종류 C-p 수익증권  |
|                                 |                             |                  | 종류 S-p 수익증권  |
| 게 20 조(비스)                      | <b>ふき Cっ Cっ C</b> ;         | <b>◎/ㅂ□ 새러</b> ▷ | <u>종류 S-i 수익증권</u>   |
| 제 39 조(보수)<br>                  | 종류 C-p, S-p, S-i<br>수익증권 신설 | (신설)             | ③ (본문 현행과 같음)<br><mark>종류 C-p 수익증권</mark>  |
|                                 |                             |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5   |
|                                 |                             |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6.0   |
|                                 |                             |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
|                                 |                             |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
|                                 |                             |                  | <u>0.25</u>  |
|                                 |                             |                  | <u>종류 S-p 수익증권</u>   |
|                                 |                             |                  | <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u> : 연 <b>1000</b> 분의 5.5   |

|                       |                             |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종류 S-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2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0.25 |
|-----------------------|-----------------------------|---|---|
| 제 41 조(환매수수<br>료)     | 종류 C-p, S-p, S-i<br>수익증권 신설 | ②(본문 생략)<br>(신설)  | ②(본문 현행과 같음) 종류 C-p 수익증권 : 없음 종류 S-p 수익증권 : 없음 종류 S-i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 제 52 조(수익증권의<br>통장거래) | 종류 C-p, S-p 수<br>익증권 신설     |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br>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br>을 할 수 있다. |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br>익증권통장거래약관 <u>(C-p 클래스 및 S-p 클</u><br><u>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u><br><u>관")</u>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

#### 나. 투자설명서

| 7· TYI 20YI                    |                                |                      |  |
|--------------------------------|--------------------------------|----------------------|--|
| 변경항목                           | 정정시                            | ·유 변경전               | 변경후  |
| 제 1 부 모집 또는                    | 매출에 관한 사항 및                    | L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 | 사항   |
| 1.집합투자기구의<br>명칭                | 종류 C-p, S-p,<br>S-i 수익증권<br>신설 | (신설)                 | <u>종류 C-p, S-p, S-i</u><br>( <u>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Z155,</u><br>AZ156, AZ157)  |
| 6. 집합투자기구<br>의 구조<br>나. 종류형 구조 | 종류 C-p, S-p,<br>S-i 수익증권<br>신설 | (신설)                 | 종류 C-p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정보) 집합투자업자: 0.55% 판매회사: 0.60% 신탁업자: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 종류 S-p (가입자격: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 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

|                               |  |   |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정보) 집합투자업자: 0.55% 판매회사: 0.18% 신탁업자: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  종류 S-i (가입자격: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30%) (보수 정보) 집합투자업자: 0.55% 판매회사: 0.012% 신탁업자: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 |
|-------------------------------|--|---|--|
| 9. 집합투자기구<br>의 투자전략 및<br>수익구조 | 자산배분 가이<br>드라인 폐지로<br>인하여 관련 문<br>구 삭제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을 각각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자산배분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투자전략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BGF 글로벌멀티에셋 인컴 펀드"가 해당 자산배분범위의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주식 또는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할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투자신탁은항시 동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피투자펀드는 상기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할예정입니다. 피투자펀드는 상기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할예정입니다. 피투자펀드는 상기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하기위해해당 투자제한 비중 등을내부 전산 시스템에 계량적으로 입력하고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모니터링합니다. 만일 투자비중이 투자제한 수준에 근접하게되면, 전산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경고시그널이 나타나며,해당 사실이 운용역과관련부서 담당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운용역은 사전에 투자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할수 있으며,관련 조항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 입니다.   |
| 13. 보수 및 수수<br>료에 관한 사항       | 종류 C-p, S-p,<br>S-i 수익증권<br>신설         | (신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br>조)와 동일   |

| 14. 이익배분 및<br>과세에 관한 사항                        | 종류 C-p, S-p<br>수익증권 신설<br>에 따른 연금저<br>축계좌 가입자<br>에 대한 과세 | (신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상세 내<br>용 추가  |
|--|--|---|---|
| 14. 이익배분 및<br>과세에 관한 사항<br>과세 - 수익자에<br>대한 과세율 | 세법개정에 따<br>른 관련 문구<br>변경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br>은 <b>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b><br><b>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br>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 [별첨 2 피투자집<br>합투자기구의 투<br>자위험]                 | 재간접투자기구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 추가보완                           | (신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b>관련내</b><br>용   |

#### 다. 간이투자설명서

| 다. 간이루자설명서            |  |  |   |  |
|-----------------------|--|--|---|--|
| 변경항목                  | 정정시                                    | <b>나유</b> 변경전  | 변경후   |  |
|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  |   |  |
| 2. 투자전략 및<br>위험관리     | 자산배분 가이<br>드라인 폐지로<br>인하여 관련 문<br>구 삭제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을 각각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자산배분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투자전략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BGF 글로벌멀티에셋 인컴 펀드"가 해당 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주식 또는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할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투자신탁은 항시 동 목표자산배분범위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유연한 접근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투자신탁 입니다.  |  |
| 제 2 부 매입 및 환          | 매관련 정보                                 |  |   |  |
| 1.보수 및 수수료<br>에 관한 사항 | 종류 C-p, S-p,<br>S-i 수익증권<br>신설         | (신설)   | 종류 C-p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정보) 집합투자업자: 0.55% 판매회사: 0.60% 신탁업자: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 종류 S-p (가입자격: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 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 |  |

|                 |  |          | 입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정보) 집합투자업자: 0.55% 판매회사: 0.18% 신탁업자: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 종류 S-i (가입자격: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보수 정보) 집합투자업자: 0.55% 판매회사: 0.012% 신탁업자: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 |
|-----------------|--|----------|---|
| 2. 과세에 관한<br>사항 | 종류 C-p, S-p<br>수익증권 신설<br>에 따른 연금저<br>축계좌 가입자<br>에 대한 과세 | (신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상세 내<br>용 추가  |
| 2. 과세에 관한<br>사항 | 세법개정에 따<br>른 관련 문구<br>변경                                 | 일반법인 14% | 일반법인 15.4%(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5. 기 타: 변경 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는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